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어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제명을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·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‘제명’ 수정(제1조, 제2조제1항, 별표, 별지2호서식, 별지4호서식)
 - 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을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로 변경
- 나.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·기준 조정(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의견수렴(‘22.11.9.~11.16.)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 제명 “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원조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와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
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·기준 조정

별지 제2호서식, 별지4호서식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자원조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와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</u> 」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	제2조(자원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	개정안	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시행규칙[별표]		문화체육관광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[별표]	
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(제3조 관련)		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(제3조 관련)	
지정 범위	지정 기준	지정 범위	지정 기준
1. 신문사	○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	1. 신문사	○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
2. 뉴스통신사	○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	2. 뉴스통신사	○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
3. <u>출판사 및 인쇄사</u>	○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<u>10연(連: 종이를 세는 단위)</u>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	3. <u>인쇄(출판)사</u>	○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<u>10연(1연=A4 4,000장)</u>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4. <u>영화사</u>	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(영화수입업자는 제외한다)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	4. <u>영화사(녹음, 현상 포함)</u>	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(영화수입업자는 제외한다)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5. 음반사 및 비디오물제작사	○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	5. 음반사 및 비디오물제작사	○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6. <u>법인 또는 단체</u>	○ <u>문화·예술 또는 관광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</u>	6. <u>유관기관·협회·단체</u>	○ <u>문화·예술·체육 또는 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관기관·협회·단체</u>
7. 호 텔	○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	7. 호 텔	○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		
업 체 명		대표자 성명
		사업자등록번호
소 재 지	(전화번호:)	
임 무		
지정 사유		
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.		
년 월 일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		직인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	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			
업 체 명		대표자 성명	
		사업자등록번호	
소 재 지	(전화번호:)		
동원방법		사용(통제)기관	
임 무			
임무기간		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.			
년 월 일	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			직인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제 호						
비 축 명 령 서						
업체명:			소재지:			
대표자 성명:			대표자 생년월일:			
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.						
품목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비축 장소	비축 기간	비고
년 월 일				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				직인		

.....자르는 선.....간인.....

제 호		
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		
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
수령 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업체의 장과의 관계
	수령 일시	수령 장소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제 호						
비 축 명 령 서						
업체명:			소재지:			
대표자 성명:			대표자 생년월일:			
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.						
품목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비축 장소	비축 기간	비고
년 월 일				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				직인		

.....자르는 선.....간인.....

제 호		
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		
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
수령 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업체의 장과의 관계
	수령 일시	수령 장소